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안내문(도배·장판 공사용)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도배장판 공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도배장판 공사를 원하는 입주자는 전세계약 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사업체 관계자께서도 아래사항에 유의하셔서 시공 및 비용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배·장판 공사 지원내역

- 도배·장판 공사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의뢰
- 지원금액 : 부가세 포함하여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전세임대 수혜기간(20년)동안 10년마다 1회씩 지원 가능
- 시공업체 선정 :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 발행

2. 도배·장판 공사 시 유의사항

- 공사 전에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에 착수
 - ➡ 임의로 시공하시면 공사비 지급 불가
- 공사 전·후 사진을 촬영
 - ➡ 현관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전·후 모습을 같은 위치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촬영
 - ➡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비스듬히 촬영하여 시공지점이 가급적 넓게 보이도록 촬영
 - ➡ 촬영지점은 모서리진 곳, 창문·방문이 보이는 곳 등 특이점들을 선정
 - ➡ 공사 전·후에 달라진 모습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촬영
 - ➡ 도배지 및 장판 자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3. 비용청구시 제출 서류

- 세금계산서
 - ➡ 공사비 총액(부가세 포함)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공사비 : 545,455원, 부가세 : 54,545원)
 - ➡ 6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입주자에게 청구
 - ➡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으로 보내는 당일로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도배·장판 업체 통장 사본
- 견적서
- 교체공사 완료확인서
 - ➡ 입주자의 서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는 하자 여부를 확인 후 서명
 - ➡ 공사비 내역에는 공란이 없이 작성
- 공사 전·후 촬영한 사진대지

4. 도배·장판 관련 문의사항

-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으로 문의(7페이지 참조)

※ 관련 서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서 ❶ 정보마당 ▶ ❷ 관련서식자료실 ▶ ❸ 전세임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1)

입주자 확인		
확인일시	월	일
확인자		
서명		

■ 공사비 내역

주소					
등기부상면적		(㎡)	입주자성명		전화번호
공사내역		구분	제품명(코드번호)	수량	공사비
		벽지		(㎡)	원
		바닥재		(㎡)	원
		부자재			원
		인건비			원
		소계			원
		총공사비(부가세 포함)			
공사업체	상호명		대표자		전화번호
비용부담	총 공사비	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원	입주자

■ 입주자 및 시공업체 유의사항

- 도배장판 교체공사비는 부가세 포함 60만원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해드리며, 6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 공사비 총액(부가세 포함)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만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발송일로 기재.
- 시공 전에 반드시 견적서(자재명, 수량, 단가를 포함한 상세견적)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보내고 유선으로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시공하셔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 시공 후 아래의 붙임서류(사진)와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견적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사 전·후 비교 가능한 사진을 붙여야 함

〈우편 보내실 주소〉

- (169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상현동) 광교우미뉴브 C동 2층 R236호 서린 법무법인
- (0612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길 26, 3층(역삼동) 덕수 법무법인
- (070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8, 4층(서초동, 양원빌딩) 선린 법무법인

※ 지역별 담당 법무사(법무법인) 확인은 7페이지 참조

-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 확인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라며, 공사상 하자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업체와 직접 상의하셔야 합니다.(명함 수령)
-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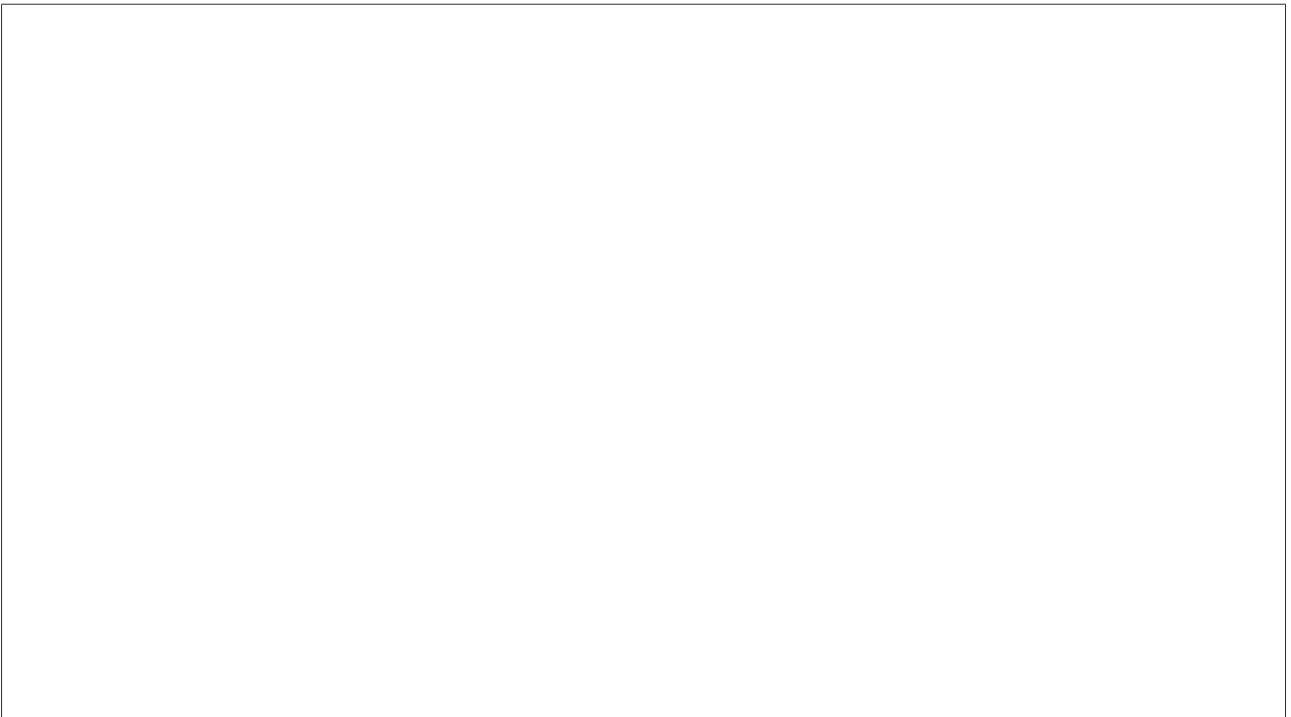
도배·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2)

공사일 : 년 월 일

■ 공사 전 사진 : 전경 / 거실 / 방1 / 방2 / 방3



■ 공사 후 사진 : 전경 / 거실 / 방1 / 방2 / 방3



◆ 도배장판 시공 안내

- 도배장판 교체공사비는 부가세 포함 60만원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해드리며, 6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1. 공사비 총액(부가세 포함)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만 발행.
 2.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발송일로 기재.
- 시공 전에 반드시 견적서(자재명, 수량, 단가를 포함한 상세견적)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보내고 유선으로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시공하셔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도배 · 장판 시공완료 후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2. 통장사본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도시공사 도배 · 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 - 입주자 확인 서명 받으셔야 합니다
6. 공사 전 · 후 비교 가능한 사진 첨부

※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

구분	권역	지역	법무법인	전화	FAX
남부	제1권역 (7개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서린 법무법인	031.213.3020 031.213.1115 070.4282.0184 070.4282.0187	031.360.6380
	제2권역 (9개시)	과천시, 광주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서린 법무법인	031.214.4020 070.4150.0724 070.4150.0725 070.4907.8157	031.360.6370
북부	제3권역 (6개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덕수 법무법인	02.554.5302 070.4464.7630 070.4496.1716 070.4496.1714	02.6008.5306
	제4권역 (9개시·군)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선린 법무법인	1670.6347 070.5167.1397 070.5167.1406 070.5167.1390 02.6348.6347	02.6280.7760

법무법인
선린